'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'

1.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 요약
2. (가상) 신종감염병 환자 입국시 방역대응의 변화 양상
3.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(총 48개 중점과제)

1 신종감염병 대응 방역체계 개편방안 요약

대응단계		현황	경험 사례	개편방안	개편 완료시까지 임시조치
국내유입차단	국제 감시체계	▪ WHO 등 홈페이지 정보 수집 ▪ 전문적 정보분석 부재 ▪ 보건소, 의료기관과 정보공유 부재	▪ 초기 '2m, 1시간' 협소한 기준 설정 ▪ 국내 유입가능성 평가 부재 ▪ 지자체, 의료기관의 늦은 신고 (1번 환자 4번째 병원에서 발견)	▪ 신종감염병 동향, 국제감시체계구축 ▪ 국제활동 강화 및 정보분석, 매일 위기 보고서 작성·배포-의료계,여행업계 등 ▪ WHO 등 국제기구와 인적교류 제도화 ▪ 해외신종감염병 유행시 역학조사관 파견	▪ 복지부에서 WHO와 협력강화(임시) - 질본 WHO Focal Point 지속 운영 ▪ 감염병 발생국 위주 재외공관 등을 통해 정보취득·분석, 의료기관에 제공
	출입국 검역	▪ 탑승객 진술에 의존한 검역 ▪ 검역관당 1일 1,600명 담당, 인력부족	▪ 1번 환자 검역통과, 사후관리 부재	▪ 게이트 개별 발열체크, 의심자 격리·진단 ▪ EOC감염병 감시 정보 및 출입국 정보시스템연계, 보건소 사후관리 및 의료기관에 정보제공 ▪ 공항 검역관 및 격리실 확충 및 진단시설 설치	▪ 중동 입국자에 집중, 게이트 검역 및 모니터링 실시 ▪ 출입국, 연락처 등 정보 수기입력 SMS 등 안내, 의료기관에 정보제공
초기 현장대응		▪ 역학조사관 34명 중 공보의 32명 ▪ 환자 진술에 의존 ▪ 감염경로, 특성 분석 부재	▪ 1번 환자 사우디 경유사실 미인지 ▪ 협소한 접촉자 기준(동일병실) 적용, 접촉자(간병인, 문병인 등) 다수 누락 ▪ 관리대상 외 환자 발생 지속	▪ 24시간 긴급상황실(EOC) 운영 - 美·中 CDC 방문결과 반영 ▪ 즉각대응팀 구성·출동, 총괄 지휘·통제 - 신속한 초기 대응, 현장 중심의 방역 체계 ▪ 정규 역학조사관 64명 확보, 방역직 신설 - 우수인력 유치, CDC EIS 벤치마킹하여 조사역량강화	▪ 질본에 임시 24시간 상황실 운영, 신고·상담체계 구축 ▪ 민간전문가 풀 확보, 상황발생시 즉각대응팀 즉시 구성
유행확산대응	접촉자 격리	▪ 격리시설 지정 법적근거 부재, 자가격리 조치 ▪ 접촉자 관리시스템 없음	▪ 형식적 자가격리 조치로 해외출장, 골프여행 등 이탈사례 보도	▪ 시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▪ 중앙-지자체 공동 종합정보시스템 구축	▪ 복지부 산하기관(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)을 격리시설로 임시 활용
	진단·치료	▪ 국립보건연구원 1개 진단시설 ▪ 국가지정 격리병원 지정(17개)	▪ 진단 지연(2~3일), 판정 번복 사례 ▪ 음압병상 부족, 환자 원거리 이동	▪ 신속정확한 진단체계 구축 - 국립보건연구원 진단실험실 확충 ▪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- 중앙 감염병전문병원· 권역별전문치료병원 지정 (최소 300병상 이상) ▪ 백신 치료제 등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추진 - NIH 국가연구시설 확충, ICT 활용 감염병 다부처 R&D 추진	▪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검사 실시 (민간검사기관에도 시약 제공) ▪ 국가지정격리병상 지정·운영 지속 및 병상 확대 추진(금년 추경) ▪ 개인보호장구 비축 확대(금년 추경)
거버넌스		▪ 위기경보단계상 기관별 역할 불명확 ▪ 법률상 중앙-지자체 권한·책임 불명확 ▪ 위기관리 소통 전략 부재	▪ 컨트롤타워 논란 발생 ▪ 휴교조치 혼선, 유언비어 확산, 정보비공개 비판 고조	▪ 컨트롤타워 재설계 - 위기수준과 관계없이 방역조치는 질병관리본부 수행 - 복지부, 안전처는 현장방역활동 지원 ▪ 중앙의 지휘통제권 확립, 질본 본부장 위상제고(차관급) 및 전문성 제고 - 인사·예산권 보장 ▪ 위기소통 역량강화 및 정보 투명성 확보	▪ 개편방안 발표 후 위기대응매뉴얼 즉시 개정 ▪ 복지부에서 위기소통 임시담당
의료환경		▪ 대형병원 붐비는 응급실 ▪ 사적 간병, 문병, 병원쇼핑 문화 ▪ 의료진 인식부족	▪ 응급실에서 대규모 확산 ▪ 의료기관종사자 다수(39명) 감염	▪ 응급실 내 감염병환자 선별진료 의무화, 방문객 제한 ▪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포괄간호 확대 ▪ 병원내 감염관리인력 확대, 병원문화 개선	▪ 상황 발생시 국민안심병원(선별진료소 등) 운영 재실시 ▪ 방문객 제한 및 명부작성 가이드라인 마련·이행

2 〔가상〕 신종감염병 환자 입국시 방역대응의 변화 양상

구 분	개편 전	개편 후
긴급상황실 (EOC)	▪ WHO·美 CDC 홈페이지 정보만 수집 ▪ 형식적 매뉴얼 및 훈련 미흡, 지자체/의료기관의 늦은 신고	▪ 국제 네트워크 및 각종 학술 정보 등 **사전정보 분석·공유** ▪ 과학적 **매뉴얼** 및 **실전훈련, 24시간 핫라인 신고 접수**
의심환자 입국	▪ 입국검역시 본인진술 이외 정보파악 곤란 ▪ 다수에 대한 집단검역에 따라 의심환자 사전 발견 미흡	▪ 출입국 **정보 연계** → 보건소 **사후 모니터링 실시** ▪ **게이트 검역**으로 개별 발열 검사 및 의심시 격리·진단
국내감시 (의료기관)	▪ 질병정보·진단방법 훈련 미흡 ▪ 내원시 여행력 파악 곤란	▪ **정보 사전 습득** (위기보고서/훈련) ▪ **진료시 환자의 여행력 정보 사전 파악**하고 주의하여 진료
현장대응	▪ 중앙-지자체 초동대응 혼선 ▪ 중앙역학조사관 역량 미흡 ▪ 정보수집, 격리조치 등 방역조치 미흡 ▪ 정보공개지연	▪ **중앙-지자체** 역할 명료화 ▪ **전문역학조사관 확보(64명)** ▪ **즉각대응팀** 즉시 출동 - 역학조사, 격리조치, 현장통제, 신속진단 등 충분한 방역조치 실시 ▪ 신종감염병 **발생 즉시, 병원 명단 등** 관련 **정보 공개**
진단 및 전문치료	▪ 진단검사 지연(2일) ▪ 병상·설비 준비 부족 → 후송체계 미구축 → 이송·치료 지연 ▪ 음압병상부족(현재 500병상)	▪ **8시간 이내 검사 완료** ▪ **중앙 및 권역 치료전문병원**으로 즉시 이송·전문치료 실시 ▪ **감염병 환자치료** 적정 **음압병상 확보**('20년, 1,500병상)
의료환경	▪ 응급실 내 감염병환자 미분리 ▪ 감염에 취약한 6인실 위주 입원실 ▪ 환자 가족 병문안 일상화 ▪ 가족 중심의 간병문화	▪ 응급실 감염병환자 **선별진료 의무화** ▪ **4인실 위주**로 개편 ▪ 환자가족 등 **방문객 출입제한** 및 **명단 관리** ▪ **포괄간호서비스** 조기 **확대**

3 국가방역체계 개편 추진 계획(총 48개 중점과제)

중 점 과 제	주관 부서	협의 부처	기한
□1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 차단			
1-1 신종감염병 국제감시 체계 구축			
1-1-1 국제기구 감염병 감시네트워크 참여	질병관리본부 (감염병관리과)		~'15.하
1-1-2 신종감염병 위기보고서 배포	질병관리본부 (공중보건위기대응과)		~'15.하
1-1-3 질병관리본부 국제협력 전담부서 신설	보건복지부 (창조행정담당관)	행자부	~'15.하
1-1-4 해외전문기관 및 협력국가에 인적교류 제도 신설	보건복지부 (인사과) 질병관리본부	인사혁신처, 외교부	~'15.하
1-2 출입국 검역 강화			
1-2-1 위험국가 입국자 전수 게이트 검역 실시	질병관리본부 (검역지원과)	국토교통부	~'16.하
1-2-2 위험국가 입국자 입국 후 모니터링 실시	질병관리본부 (공중보건위기대응과)		~'16.하
1-2-3 위험국가 출국자 대상 예방 검역 실시	질병관리본부 (검역지원과)	국토교통부	~'16.하
1-2-4 스마트 검역 정보시스템 구축	보건복지부 (정보화담당관)	법무부	~'16.하
1-3 격리, 검사시설 등 검역 하드웨어 확충			
1-3-1 인천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실 확충	질병관리본부 (검역지원과)	기재부	~'16.하
1-3-2 4개 공항에 부속 진단검사실 설치	질병관리본부 (검역지원과)	기재부	~'16.하

중 점 과 제	주관 부서	협의 부처	기한
2 초기 즉각 현장 대응			
2-1 24시간 감염병관리 긴급상황실 운영			
2-1-1 긴급상황실 조직 신설	보건복지부 (창조행정담당관)	행자부	~'15.하
2-1-2 긴급상황실 운영*	질병관리본부	기재부	~'16.상
2-1-3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및 훈련	질병관리본부 (공중보건위기대응과)		~'16.상
2-2 즉각대응팀 투입 및 현장대응 실시	-		
2-2-1 즉각대응팀 구성·운영	질병관리본부 (공중보건위기대응과)		~'16.상
2-3 우수한 역학조사관 확충 및 양성	-		
2-3-1 역학조사관 정규인력 확보	보건복지부 (창조행정담당관)	행자부	~'15.하
2-3-2 우수 전문인력 유치	보건복지부 (인사과)	인사혁신처	~'15.하
2-3-3 전문교육 훈련프로그램 운영	보건복지부 (인사과)		~'16.상
3 유행 확산 시, 보건의료자원 총력 동원			
3-1 신속·정확한 진단체계 구축			
3-1-1 감염병 진단, 실험 인프라 확충	질병관리본부 (감염병센터, 검역지원과)		~'16.하
3-1-2 신속진단 제도 정비	보건복지부 (보험급여과) 질병관리본부 (감염병센터)		~'16.하
3-1-3 긴급대응 진단, 치료제 도입 제도 정비	보건복지부 (질병정책과)	식약처	~'16.하
3-2 격리시설 사전 확보 및 격리자 관리 강화			
3-2-1 격리시설 지정 의무화	보건복지부 (질병정책과) 질병관리본부 (공중보건위기대응과),		~'16.하
3-2-2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	보건복지부 (정보화담당관)		~'16.하

* '16년 상반기전까지는 임시로 운영하고 하반기 중 직제 신설

중 점 과 제	주관 부서	협의부처	기한
3 유행 확산 시, 보건의료자원 총력 동원			
3-3 감염병 전문 치료체계 구축			
3-3-1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대	보건복지부 (응급의료과) 질병관리본부 (공중보건위기대응과)	기재부	~'16.하
3-3-2 음압병실 설치 의무화	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		~'16.하
3-3-3 전문치료병원 지정 제도 도입	보건복지부 (질병정책과)	기재부	~'16.하
3-3-4 대응자원의 비축, 배분 체계화	질병관리본부 (공중보건위기대응과)		~'16.하
3-4 신종감염병 연구개발 강화	-		
3-4-1 다부처 R&D 프로젝트 추진	보건복지부 (보건의료기술개발과) 질병관리본부 (연구기획과)	미래부 농림부	~'16.상
3-4-2 메르스 연구자원 D`B화, ICT 기술활용	질병관리본부 (생물자원은행과)	미래부	~'15.하
3-4-3 국립보건원 내 신종감염병 연구기능 강화	보건복지부 (창조행정담당관)	행자부	~'15.하
4 신종감염병 거버넌스 개편			
4-1 방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컨트롤타워 재설계	보건복지부 (질병정책과)	안전처	~'16.상
4-2 중앙-지방 역할 명료화 및 중앙 지휘 통제권 확립	보건복지부 (질병정책과) 질병관리본부 (공중보건위기대응과)	행자부	~'16.상
4-3 질병관리본부 위상제고 및 전문성 강화	보건복지부 (창조행정담당관)	행자부	~'15.하
4-4 위기관리소통 역량강화 및 정보투명성 확보			
4-4-1 위기소통 전담부서 신설	보건복지부 (창조행정담당관)	행자부	~'15.하
4-4-2 신종감염병 발생시 절차에 따라 관련정보 공개	보건복지부 (질병정책과)		~'15.7

중 점 과 제	주관 부서	협의 부처	기한
5 병원감염 방지 의료환경 개선			
5-1 응급실 내 감염관리 강화			
5-1-1 감염병 의심환자 별도 응급진료체계 도입	보건복지부 (응급의료과, 보험급여과)		~'16.하
5-1-2 방문객 출입제한 및 명단관리 강화	보건복지부 (응급의료과)		~'16.하
5-1-3 응급실 과밀화 해소 추진	보건복지부 (응급의료과 보험급여과)		~'16.하
5-2 입원실 격리병상 확충 및 간병구조 개선			
5-2-1 1, 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 확대	보건복지부 (보험급여과)		~'16.하
5-2-2 4인실 입원실 확대 및 입원실 환경 개선	보건복지부 (보험급여과, 의료기관정책과)		~'16.상
5-2-3 포괄간호서비스 확대	보건복지부 (보험정책과, 보험급여과)		~'16.하
5-3 병원 내 감염 전문인력 확충 및 예방 강화			
5-3-1 「감염관리실」 설치의무, 인력요건 강화	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		~'16.하
5-3-2 감염방지 시설기준 강화	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		~'16.하
5-3-3 병원감염 실태조사 신설 및 교육훈련·자문 지원	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		~'16.하
5-3-4 감염전문의사 협력진료 활성화	보건복지부 (보험급여과)		~'16.상
5-3-5 감염관리 의무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	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		~'16.하
5-3-6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	보건복지부 (보험급여과)		~'16.상
5-4 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			
5-4-1 의료기관 간 의뢰-회송 및 진료협력 활성화	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, 보험급여과)		~'16.하
5-4-2 병문안 등 면회문화 개선	보건복지부 (의료기관정책과)		~'16.하